

2025년귀속 연말정산안내문 및 근로소득공제신고서

제출기한
1월 27일

< 회사명 : >

근로자	성명		입사일		주민등록번호	
	주소(등본상)				휴대폰번호	

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단, 25년도 중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달이 있는 근로자일 경우 반드시 월별출력을 하셔야 합니다.
- 중도 입사자는 종전 회사에서 <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> 을 발급 받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종합, 근로, 퇴직, 양도 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.(단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50만원)

체 크 리 슷 (유, 무에 표시해주세요)		
1.	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십니까?	유 무
2.	배우자가 있습니까? (배우자 근로소득금액이 연 150만원 초과일 경우, 맞벌이 경우는 무 에 표시)	유 무
3.	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?	유 무
4.	한부모이십니까? (자녀수와 상관없음. 부녀자공제와 중복되지 않음)	유 무
5.	결혼한 여성근로자에 해당합니까?	유 무
6.	부양가족중 2005.1.1 이후(만20세) 출생한 자녀가 있으십니까?	총 명
7.	부양가족중 1965.12.31 이전(만60세) 출생한 부모, 장인, 장모, 외조부모	총 명
8.	부양가족중 1955.12.31 이전(만70세이상) 출생한 부모, 장인, 장모, 외조부모	총 명
9.	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서가 있습니까?	총 명
10.	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자료(PDF)가 있습니까?	유 무
11.	월세액, 주택청약종합저축,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 있는 경우 별지의 확인사항을 읽고 예 아니오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!!	유 무
12.	올해 결혼하십니까?(혼인관계증명서 필요)	유 무
13.	다른 회사에 근무를 한 경우가 있나요?(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유 무

부 양 가 족				
번호	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비고

◆ 첨부서류 ◆

- ▶ 등본(가족관계증명서),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- ▶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,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,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, 주택자금,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, 기부금)
※ PDF파일로 저장하신후 변경없이 그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
PDF저장하실때 암호는 걸지 말아주세요^^
- ▶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제출부탁드립니다.
※ 안경구입비, 취학전아동의교육비(미술학원, 태권도장외), 기부금(종교단체)등
- ▶ 월세 (임대차계약서사본 / 등본 / 송금내역통장, 송금증, 현금영수증 중 택1)
- ※ 기재상의 착오나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제외 등 추후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성실한 기재 및 반드시 증빙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

이로운세무회계사무소

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(별지)

■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

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? (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가능하고,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함)	예	아니오
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?	예	아니오
③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7,000만원 이하입니까?	예	아니오
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?	예	아니오

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

① 무주택세대주입니까? (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연도중 무주택이어야 함)	예	아니오
② 2026.2.28.까지 금융기관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? ※ 참고로 연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하고 당첨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가능함.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오른쪽 란에 '공제불가'라고 기입바람	예	아니오

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

①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? (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하고, 세대주가 모든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함)	예	아니오
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?	예	아니오
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습니까?	예	아니오
④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이자*1를 지급하고 있습니까? *1. 이자율은 근로자확인사항에서 확인하길 바람	예	아니오
⑤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대환하신 경우에 해당 합니까?		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

① 주택의 명목과 차입금의 명목이 근로자 본인 것입니까? (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시 등의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공제가가능함)	예	아니오
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입니까?	예	아니오
③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?	예	아니오
④ 2013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까?(2014년 이후에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여부 상관없음)	예	아니오
⑤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(매입가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시하는 가액을 말함)가 6억원 이하입니까? 단, 13년 이전 차입한 경우의 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입니까? 14~18년은 기준시가 4억 21.2.17이후 23.12.31까지 차입분 5억 이하임	예	아니오
⑥ 2006.1.1.~2013.12.31.까지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이후 세대 전원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된 경우 그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 공제가가능하며, 2014.1.1.이후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됩니까?	예	아니오
⑦ 2025년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의 주택이 1채입니까?	예	아니오
⑧ 차입금 잔액을 일시상환하였는지의 여부와 대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관련 내용에 해당 합니까?	예	아니오
⑨ 2025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. 6억원 이하입니까? 20년 이전의 경우 분양권 취득가격이 4억 이하였습니까? 여기 해당합니까?	예	아니오

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(별지)

■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

의료비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?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, 보청기, 장애인보장구와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말합니다.	예	아니오
※ 참고로 난임시술비와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는 국세청 자료에 지출내역이 나오긴 하나 해당 내역인지 알 수 없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에 나올 예정이지만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		
※ 2019년 귀속분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→My 홈택스→ 실손의료보험금을 클릭후 해당 금액을 알려주시길 바라고 해당 금액은 2017년 수령금액 부터 부터 일괄 조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2024년 귀속 수령 금액이 구분되면 해당 금액을 구분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		
☞ 총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()원		
2025년 귀속분 수령액()원		